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30 개 월 이 상 복 무 한 상 등 병
만 기 전 역 자 의 특 별 진 급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을 신청한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진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특별진급 여부를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 서식과 관계 서류 규정 (안 제3조)

나. 사실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법률에서 위임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규정(안제5조)

라.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서식 규정(안 제6조)

마. 특별진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 규정(안 제7조)

바. 특별진급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간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 8조, 제9조)

사. 특별진급 결정자에 대한 발령 사실을 병무청과 보훈처에 통보(안 제 1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족의 범위)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유족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3.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제3조 (특별진급 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진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무 기관장(이하 복무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복무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특별진급 사실조사단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 상등병 만기전역자 특별진급 사실조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조사단에는 단장 1명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 등 10명 내외의 단원을 둘 수 있다.

③ 조사단을 설치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병적확인 및 인사기록 확인 등에 관하여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특별진급 제한)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복무 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 당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진급

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군 복무 중의 범죄사실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확정된 사람

제6조 (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무 기관장은 진급신청 대상자의 특별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이의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복무 기관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진급신청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진급 제한사유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복무 기관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특별진급 신청,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제8조에 따른 특별진급 결정 및 통보,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진급 결정자에 대한 행정조치) ① 복무 기관장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특별진급 발령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적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이 결정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대하여 신청인이 별지제1호 서식의 진급신청서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 변경을 희망한 경우 그 사실을 보훈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훈처는 해당 인원의 묘비 등의 계급을 수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진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특별진급 신청대상 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국립묘지 묘비 등 계급 변경(신청, 미신청, 해당 없음 중 선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급신청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진급신청 대상자(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제적등본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진급신청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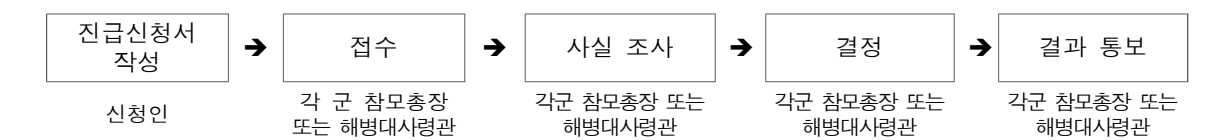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진급결정서

접수번호	제 호	
진급신청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군번	
신청인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 문		
결정 이유		

년 월 일

()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직인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진급신청 대상자	성명		
	군번		
신청인	성명		
	주소		
	진급신청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이의신청 사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별진급 신청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인 제출서류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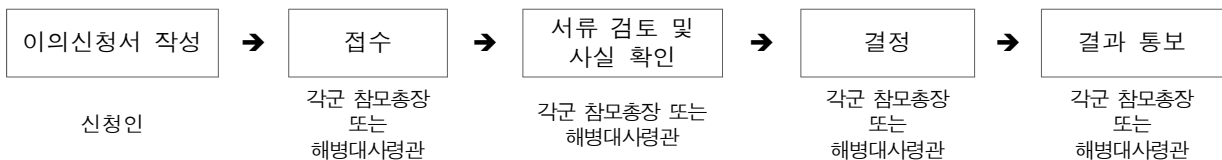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군인, 군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8